

#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

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△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△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 업체 참여도 반영 △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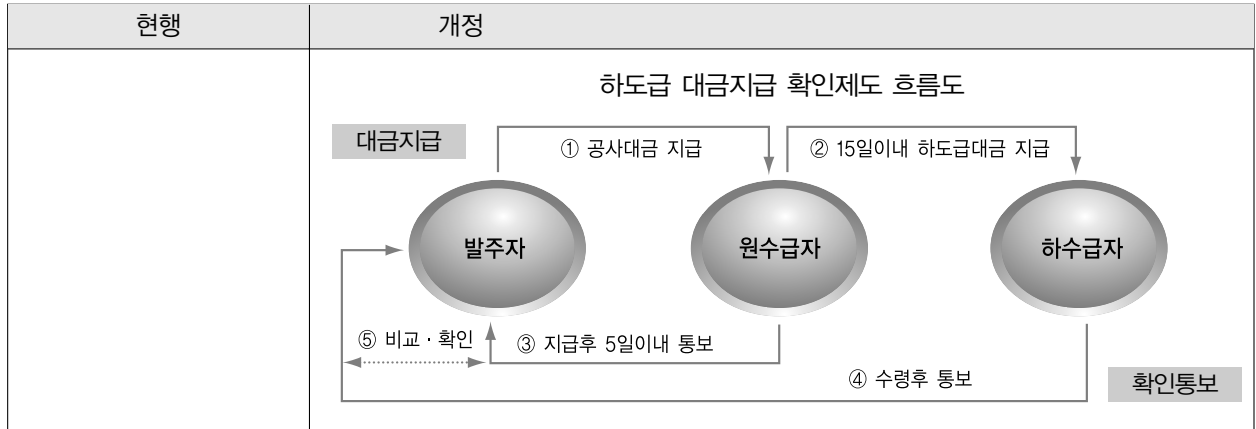
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,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·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.

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[편집자 주]

##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

□ 「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」 도입(공사계약일반조건 §16, §39, §40, §43의2, '10.9.8 시행)

현행	개정
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만 내부기준에 의거, 제한적으로 「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」 시행	모든 국가기관에 「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」 도입 -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(이하 하수급인 등)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함께 제출 -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시 15일이내에 하도급·자재·장비대금(이하 하도급대금 등)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내역 통보 -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·확인 ※ 하도급대금 등 부당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건산법·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및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



□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관련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개정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공사감독관) ① ~ ⑤ (생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제39조(기성대가의 지급)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서(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16조(공사감독관) ① ~ ⑤ ( 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, 건설기계대여업자(이하 “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”이라 한다)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39조(기성대가의 지급) ① _____ _____</p> <p>대금지급청구서(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) _____ _____</p> <p>② ( 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금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에게 기성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(수령자, 수령액, 수령일 등) 및 증빙서류를 제출(「전자서명법」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.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)하게 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제40조(준공대가의 지급)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	제40조(준공대가의 지급) ① _____ 대가지급청구서(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)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_____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(수령자, 수령액, 수령일 등)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43조의2(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)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가 시공·제작·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(이하 “하도급대금 등”이라 한다)을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,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(수령자, 지급액, 지급일 등)을 5일(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·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·확인하여야 한다.

□ 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§6, 별표2·3, '10.10.22 시행)

현행	개정
‘지역업체 참여도’에 따라 6~12% 가점 (각 발주기관 PQ 세부심사기준)	‘시공경험’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, ‘지역업체 참여도’ 항목을 5점 배점 ※ 턴키·대안입찰, 기술제안입찰, 지역내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 배제

□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(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·공사계약일반조건 등, '10.10.22 등 시행)

-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,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,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 ㉠